

【붙임】

NH NongHyup



2013년 농·축협 결산 지도기준

(2013. 12. .)

회원종합지원부

요 약

1. 각종 충당금 적립 및 충당부채 설정

- 신용대손충당금 : 대손추산액의 100분의 100 이상 적립
- 일반대손충당금 : 대손추산액의 100분의 100 이상 적립
- 퇴직급여충당부채 : 총 소요액의 100분의 100 상당액 설정
- 연차수당충당부채 : 총 소요액의 100분의 100 상당액 설정

2. 성과급여 지급

- 2012년도 종합경영평가 등급별 성과급여 지급률 범위 내에서 집행
- 적자예상 또는 자본잠식 농축협은 400% 이내에서 집행
- 적기시정조치 농축협은 「조합구조개선 및 경영관리준칙」에 의거 집행

3. 유가증권 평가

- 단기매매증권 : 공정가액으로 평가, 당기손익에 반영
 - 만기보유증권 :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며,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 차이를 유효이자율법으로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
- 만기보유 수익증권 평가손익은 반드시 당기손익에 반영
 - 매도가능증권 : 공정가액으로 평가, 공정가액과 장부가액과 차이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
- ※ 결산일 기준 회수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 손상차손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 회복 시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반영

4.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

5. 분식결산 금지

6. 미처분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

- 이익잉여금 처분안(결손금처리안)은 농협법 및 정관에 의거 처리
 - 출자배당
 - 납입출자금 평잔×(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2% 이내)
 - 이용고배당
 - 총 배당액의 20%이상을 조합원 이용고 배당으로 배당
 - 조합원 이용고 배당액 중 판매사업 이용고 배당 확대
- ※ 출자배당 및 이용고배당은 배당기준 참조(추후 별도통보)

1. 충당금 적립 및 충당부채 설정

가. 신용대손충당금 적립 (회계규정<예> 및 채권관리업무규정<예>)

- 신용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 대출금, 여신성가지급금, (신용)가지급금, 신용카드채권, 미수금 및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신용대손충당금 적립액 : 대손추산액의 100분의 100 이상액
 - 대손추산액은 결산일기준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정상채권의 0.65~1.99%, 요주의채권의 4~19.99%, 고정채권의 20~54.99%, 회수의문채권의 55~99.99%, 추정손실채권의 100%를 합계한 금액
- 건전성 분류단계별 충당금 적립율의 결정 및 관리
 - 각 농축협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건전성 분류단계별 적립률 범위 내에서 요적립률을 결정
 - 분류단계별로 일괄 적용되는 요적립율은 기업회계기준의 계속성의 원칙에 의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년도마다 계속 적용
 - 이와 별도로 향후 부실이 우려되는 개별채권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 회계업무방법(예) (제6장 2절 7조 1항)

『 . .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설정률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불확실채권은 회수불확실 정도별로 대손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자산건전성 변경등록 및 유의 사항 알림 문서 참조

- 중앙(상금여) 43301- 1591 2013. 11.21.

○ 고위험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 가계대출로서 건전성 분류가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인 대출에 대하여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3>에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적립
(2016.6.30.까지는 100분의 10으로 적립)
- * 고위험대출에 대한 정의는 채권관리업무방법 제1장1절5조2항 참조

나. 일반대손충당금 적립 (회계규정<예>, 경제사업규정<예>)

○ 일반대손충당금 적립대상 채권

- 외상매출금, 수탁사업미수금, (여신성)선급금, 미수금, 가지급금 중 소송및법적절차비용 · 사고피해금및수습비 · 화재공제료 입체금, 단기 · 장기대여금, 장기미수금, 협동카드계정

○ 일반대손충당금 적립액 : 대손추산액의 100분의 100 이상액

- 대손추산액은 결산일기준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정상채권의 0.65~1.99%, 요주의채권의 4~19.99%, 고정채권의 20~54.99%, 회수의문채권의 55~99.99%, 추정손실채권의 100%를 합계한 금액
- 이와 별도로 향후 부실이 우려되는 개별채권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 경제사업채권 건전성 등록 기일 염수

- 경제통합시스템의 『사무소별 자산건전성 적립비율 등록화면(20-7565)』에 수기 입력

▶ 경제사업채권 자산건전성 등재일정 및 방법 등 지도 문서 참조

○ 중앙(회경) 14804-미정, '13년 12월 중 시행예정

다.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회계규정<예>,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액 : 총 소요액의 100분의 100 상당액
- 총 소요액 : 회계년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실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 가입한 직원 분은 충당금적립 대상이 아님
- ※ 세부적인 산출방법은 「직원퇴직급여및재해보상규정(모범안)」 참조

라. 연차수당부채 설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문단 21.5의 2)

- 2014년 연차휴가 사용이 예상되는 부분과 미사용 부분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하여 2013년말에 당기 비용과 부채로 인식하여야 함
 - 근무용역을 제공한 '13년에 직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14년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1일치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비용 및 부채로 인식

연차휴가사용 촉진 제도	휴가사용 예상	총당부채 인식	비고
미시행	여	여	휴가 부여 의무
	부	여	연차수당 지급 의무
시행	여	여	휴가 부여 의무
	부	부 ^{주)}	휴가 부여 및 수당지급 의무 없음

- 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시 직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당부채 미인식
- 회계처리는 간편법을 적용하여 수당 지급 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전기 대비 증가분만 당기비용 및 충당부채로 인식

2. 등급별 성과급여(상여금) 차등 적용기준

가. 적용대상

- 대상 농축협 : 전 농축협(평가 미실시 농축협 제외)
- 대상 임직원 : 상근임원 및 전 직원(연봉제 직원을 포함하며, 계약직 및 시간제업무보조원은 제외)

나. 차등지급대상 : 정기성과급여(상여금)와 변동성과급여(상여금)

【종합경영평가 등급별 성과급여 지급률】

구 분	1~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신급여 체계 (성과 급여)	직 원 당해 농축협의 급여규정 이내 (월통상임금의 700%)	650% 이내	600% 이내	530% 이내
	연봉제 직원 당해 농축협의 급여규정 이내 (월통상임금의 60%)	55% 이내	51% 이내	45.3% 이내
	상근임원 당해 농축협의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정 이내 (연 기본연봉의 60%)			
구급여 체계 (상여금)	당해 농축협의 급여규정 이내 (1,060%)	980% 이내	900% 이내	800% 이내

- 상기 종합경영평가 등급에 의한 지급률이 「성과급여업무방법」에 의한 지급률을 초과하는 경우 「성과급여업무방법」에서 정한 지급률 적용
- 적자 및 자본잠식 농축협은 아래 지급률 이내에서 집행
 - 신급여체계 : 400% 이내 (상근임원 기본연봉의 34%이내)
 - 구급여체계 : 500% 이내

※ 단, 상기 지급률이 「성과급여업무방법」에 의한 지급률을 초과할 수 없음
- 적기시정조치대상 농축협은 「조합구조개선및경영관리준칙」에 의한 성과급여(상여금)지급률 적용
- 적용연도 : 2012년도 평가결과(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2013년도에 적용

※ 성과급여(상여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농축협은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 제98조에 의거 지원제한 조치에 포함될 수 있음

3. 유가증권 평가

- 단기매매증권은 결산 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손익을 단기 매매증권평가손익 과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
-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함. 이때 장부금액과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
※ 만기보유 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신탁예치금평가손익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미실현손익)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과목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
-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지분 변동액은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변동 원천에 따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

- 상각후취득원가 : 채무증권을 유효이자율에 따라 평가시 취득원가에서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누적액을 가산 또는 차감한 금액. 할인(할증)차금은 최초의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임
 - 유효이자율법 :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유효이자율은 채무증권으로부터 만기까지 기대되는 현금 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장부가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

※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및 환입

- 손상차손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평가하고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이 불필요 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가액으로 추정한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반영

-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을 인식한 사건과 객관적 관련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증권은 장부가액의 손상이 없었다면 나타났을 (상각후)취득원가,
매도가능증권은 기 인식한 손상차손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한도 초과분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

※ 저신용등급 유가증권 투자한도 설정 【관련 : 중앙(상자)52102-438 2013. 11. 28.】

- 목적 : 저신용등급 유가증권 편중투자 방지
- 설정내용
 - 신용등급 A- 이하 채권(기업어음은 A2- 이하)에의 투자는
외부운용한도의 30% 이내에서 가능
 -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기업어음은 A3+ 이하)에의 투자는
외부운용한도의 10% 이내에서 가능

○ 투자가능한도 관련 조회

- 통합업무시스템 '#24 9733 유가증권 종목별 투자한도 현황' 화면에
'저신용 등급 투자한도 및 가능액 조회란' 신설

☞ 관련 문의 : 상호금융자금부 상호금융자금운용지도팀(02-2080-8255~6)

4.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

가.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 대차대조표일 현재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함
 - 환율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
과목으로 당기손익 처리하고, 그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

나.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함

5. 분식결산 금지

가. 분식결산 주요 유형

- ◆ 자산건전성 부당분류로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
- ◆ 허위 매출, 원가 조작 및 부가가치세예수금 미기표
- ◆ 부당 증액대출로 연체이자 회수
- ◆ 재고자산평가손실 미계상 등

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및 벌칙사항

○ 중앙회 각종 지원 제한(회원농축협지도·지원규정 제97조 ~ 100조)

- 중앙회 자금지원 제한
- 업무지원 제한, 점포설치 지원 제한, 계통판매장 판매 제한, 농협상표 사용 제한 등

○ 종합경영평가 재평가에 의한 등급 조정, 감점(최대 △5점) 적용

○ 분식결산 농축협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사항

- 농협법에 의거 분식회계는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직무정지, 징계면직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 중대한 분식회계의 경우 민·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6. 미처분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

가. 잉여금의 처분 기준

1. 법정적립금 :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10/100 이상(자기자본 3배 한도)
2. 법정이월금 :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20/100 이상
3. 임의적립금
 - a. 사업준비금 :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20/100 이상
 - b. 유통손실보전적립금 : 적립여부 및 금액은 총회에서 정함
 - c. 사업활성화적립금 : 국고보조금(지자체, 중앙회 보조 포함) 상각액 및 고정자산처분의 중 일정액을 추가적립
4. 배당 :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20/100 이상

나. 결손금 보전 순서

- | | | |
|-----------|------------------------------|-------------|
| ① 미처분 이월금 | ② 사업활성화적립금 | ③ 유통손실보전적립금 |
| ④ 사업준비금 | ⑤ 법정적립금 | ⑥ 자본적립금 |
| ⑦ 회전출자금 | ⑧ 보전 후 부족금 발생시 차기 이월결손금으로 이월 | |

다. 배당 당시 유의사항

- ① 보통출자 배당률은 해당 농축협 1년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평균금리 + 2.0%이내 한도로 경영을 고려하여 적정수준 결정
- 정기예탁금 금리 자료는 '14. 1. 7. 별도 게시 예정
※ 등재위치 : 업무자료실/회원종합지원부/조합원 · 자기자본/자료실
- ② 우선출자 배당률은 출자액의 100분의 3이상 100분의 10이하에서 결정
- ③ 판매사업 중심의 이용고배당 확대
- 총 이용고배당금 중 가급적 20%이상 판매사업 실적으로 배당
- ④ 사업준비금 등 제 적립금은 최대한으로 적립

붙임 1-1 : 2013년 결산결차 1부

【불 임1-1】

NH NongHyup

농협은행
농협은행

2013년 결산절차

(2013. 12.)

회원종합지원부

요 약

□ 회계기간과 결산일

- 회계기간 :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결 산 일 : 2013년 12월 31일

□ 결산 절차

1. 결산준비(결산예비절차)

- 가. 미정리계정의 정리
- 나. 각종 장부기록의 검증(대사)
- 다. 각종 자산의 평가와 상각
- 라. 각종 충당금의 설정
- 마. 손익계정의 수정(보정) 등

2. 본결산(결산 본절차)

- 가. 손익이체, 잉여금 또는 결손금 표시
- 나. 총계정원장, 보조장부 등의 마감·이월

3. 재무제표(결산보고서) 작성

□ 결산 일정

일 정	주 요 처 리 내 용
'14. 1. 2.(목) ~ 6.(월)	○ '13년도 수기보정
~ 8.(수)	○ '13.12.31. 비온라인 거래완료
9.(목)	○ 결산 손익이체
'14. 1.10.(금) ~ 13.(월)	○ 회계간 자본의 배부 - 자본의 배부기표 외 비온라인거래 불가

I . 회계기간과 결산일

가. 2013년도 회계기간 :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나. 결산일 : 2013년 12월 31일

- 비온라인 계정과목은 2014. 1. 8.(수) 까지 2013.12.31.자 기산일
거래 가능

- 단, 시스템 내 보정기표는 2014. 1. 6.(월) 온라인 종료 전까지만 가능

II . 결산준비 (결산예비절차)

가. 미정리계정의 정리

1) 사무소간 · 회계간 수익 · 비용 정산

- 중앙회 및 다른 농축협간, 농축협 내부적으로 정산하여야 할 각종 수수료, 조작비,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 등은 결산일 이전에 전액 정산
- 환결제자금이자, 각 회계간 · 사업부문간의 내부자금이자 및 전속 · 공통관리비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산일 이전에 정산

2) 각종 채권의 회수

- 상환기일이 경과되었거나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각종채권(각종 대출금, 사업채권 등)과 동 미수채권의 발생이자를 전액 회수하고 미수수수료는 결산일까지 전액 수령

▶ 영업외수익계정의 "상각채권추심이익" 금액은 전산자동으로 대손충당금 계정과목으로 대체 처리됨(영업점 수기작업 불필요)

3) 미정리 계정의 정리

- 가지급금 · 가수금 · 재고자산사고미결산 및 기타 미결산계정 잔액은 건별로 내용을 검토하여 전액 정당계정으로 대체하거나 회수정리
 - 미정리계정은 원칙적으로 연도말일자 시현 불가(중점 감사사항)
 - 다만, 그 정리 또는 회수사유가 미확정됨이 명백하거나 정리기일이 미도래 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
- 가수금과목으로 처리한 것 중 당초 수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은 해당년도 결산일에 "기타영업외수익"과목으로 처리
 - 또한,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수입처리 된 금액 중 인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입처리 연도에 불구하고 "기타영업외비용"으로 처리

※ 미정리계정 게시물(업무자료실 등재 예정)을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수금 및 가지급금 잔액이 시현되지 않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결산절차 종료 후 미정리 잔액에 대한 사유서 징구 예정

4) 자금수수계정의 정리

- 미정리 타발환통지서(내부자금전금 · 역환통지서 포함)는 전부 정리하고, 당발환 중 미달이 있을 경우에는 미달환 명세에 의거 빠짐없이 조회하여 미달이 없도록 조치

5) 전년도 손익보정액 환원기표분의 정리

- 2013 회계년도 결산시 일반사업 손익계정을 보정하여 2014년 1월 2일자로 환원기표된 미수수익환출 및 미지급비용환입 과목 정리
 -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당계정(검정글씨 전표)으로 대체 기표 정리
- 정리방법

(차) 해당수익과목 × × ×	(대) 미수수익환출 × × ×
(차) 미지급비용환입 × × ×	(대) 해당비용과목 × × ×

※ 일반회계 환원기표분은 '13.12.31. 이전 해당수익비용 과목에 반드시 정리할 것

○ 해당수익 및 비용계정 잔액이 미수수익환출계정 또는 미지급비용환입 계정금액에 미달시(보정오류 또는 회수실적 저조 결과로 발생하는 비정상적 경우임) 해당 차액은 당기의 기타영업외비용(또는 수익)으로 처리

6) 제조계정 등의 정리

○ 가공사업 실시 농축협은 12월 31일자로 회계연도 중 실제 발생한 제조계정은 대변으로 정리하여 재공품 계정 차변과 대체기표

- 예정배부한 배분제조비 과목의 대변금액과 재공품계정의 차변금액 중 완성품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차변 반대로 대체기표하여 배분제조비 과목의 잔액이 시현되지 않도록 함. 금액차이가 있는 경우 원가성 여부에 따라 가공회계 배부차액 처리에 준하여 취소 또는 추가 기표함

【 제조계정의 정리 】

(차) 재공품 × × × (대) 제조계정 × × ×

【 배부차액의 정리 】

(1) 원가성이 있는 경우

① 예정배부액이 실제원가보다 많을 경우

(차) \triangle 배분제조비	× × ×	(대) \triangle 제품	× × ×
배분제조비	× × ×	재공품	× × ×

② 예정배부액이 실제원가보다 적을 경우

(차) 제품	× × ×	(대) 배분제조비	× × ×
배분제조비	× × ×	재공품	× × ×

③ 당기 제품 생산량 중 판매분에 대한 정리

(차) 제품매출원가	× × ×	(대) 제품	× × ×
------------	-------	--------	-------

(2) 원가성이 없는 경우(거액, 비경상적인 경우)

(차) 배분제조비	× × ×	(대) 재공품	× × ×
원가차손	× × ×	원가차익	× × ×
(실제원가가 더 많은 경우) (예정배부액이 더 많은 경우)			

나. 장부기록의 검증 및 대사

1) 총계정원장과 보조부의 잔액대사

- 각 계정과목별 총계정원장의 잔액과 보조부의 잔액일치 여부를 대사 확인하고 차액 발견 시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당한 잔액으로 정정 기표하여 상호 일치시켜야 함
 - 자금수수계정, 재고자산계정, 가수금,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대·차 누계액까지 대사 확인

2) 상호관련계수의 대사

- 중앙회 농·축협간 상호관련계수 대사항목

차 변		대 변	
계정과목	잔액보유	계정과목	잔액보유
시군지부 정책자금대출 관련 대출계정	시군지부	정책자금차입금	농축협
계통사업외상매출금	지역본부 등	계통사업외상매입금	농축협
상호지원기금운용	지역본부	장기차입금 (상호지원차입금)	농축협
계통출자금 (상호지원)	농축협	납입출자금 (상호지원)	지역본부
시군지부 대출계정	시군지부	장·단기차입금 (경제사업운전자금차입금, 시설자금차입금 등)	농축협
계통자산처분미수금	시군지부	인수고정자산 미지급금	농축협

○ 내부(계정간·본지점간·회계간) 상호관련계수 대사항목

구분	차 변		대 변		비 고
	회계	계정과목	회계	계정과목	
B/S 계정	신용	본지점	신용	본지점	본지점간 일치
	일반	사업소	일반	사업소	본·사업소간 일치
	일반	공동사업투자금	일반	공동사업기금	공동사업 참여·주관 농축협간 일치
	일반	신용사업투자금	신용	일반사업출자금	회계간 대차 일치
	신용	일반사업자금	일반	신용사업자금	회계간 대차 일치
P/L 계정	신용	본지점이자비용	신용	본지점이자수익	본지점간 대차 일치
	일반	사업소이자비용	일반	사업소이자수익	본·사업소간 일치
	신용 일반	지도관리비 분담비용	신용 일반	지도관리비 배분수익	본지점간 일치
	일반	내부매출원가	일반	내부매출액	비용과 수익간 일치
	신용 일반	공통관리비 분담비용	신용 일반	공통관리비 배분수익	회계간 대차 일치
	신용	교육지원사업전출	일반	교육지원사업전입	회계간 대차 일치
	신용	일반사업자금이자비용	일반	신용사업자금이자수익	회계간 대차 일치
	일반	신용사업자금이자비용	신용	일반사업자금이자수익	회계간 대차 일치
	일반	공동사업배분비용	일반	공동사업배분수익	공동사업 참여·주관 농축협간 일치
	신용 일반	기타내부비용	신용 일반	기타내부수익	본지점 및 회계간 대차 일치

○ 상호계정의 불일치여부는 중점감사항목

- 계정간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에도 담당자 착오, 계정처리 미숙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업무자료실/회원종합지원부/경영관리자료/결산·가결산/상호계정대사 오류내역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정리

다. 재고자산의 평가

- 모든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결산일 현재의 해당 보조장부의 재고수량 및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현품관리 담당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품목별·보관창고별로 실지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재고조사표를 작성
- 재고조사결과 품질저하, 진부화, 감모(재해, 도난 등 포함) 등이 있을 때에는 재고조사표에 그 내용을 기입하고 사고 처리
- 재고자산 사고미결산금액을 손실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원가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 각각 해당과목으로 처리

① 재고자산 사고계상

(차) 재고자산사고미결산 ×××

(대) 해당 재고자산 ×××

② 원가성을 가진 때

(차) 해당 매출원가 ×××

(대) 재고자산사고미결산 ×××

③ 원가성이 없는 때

(차) 재고자산감모손실 ×××

(대) 재고자산사고미결산 ×××

④ 천재지변 기타 특별사유로 인한 재고부족시

(차) 재고자산사고미결산 ×××

(대) 해당 재고자산 ×××

(차) 재해손실 ×××

(대) 재고자산사고미결산 ×××

- 재고자산의 평가는 취득원가에 의한다. 다만,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 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하고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며 평가손실 누계액을 해당 재고자산 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 직전 회계연도에 저가법으로 평가한 재고자산의 시가가 회복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누계액을 환입하여 매출원가에서 차감

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결산처리 반영

1) 지분법 적용 대상

- 농축협에서 투자목적으로 외부의 회사에 대한 투(출)자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2) 중대한 영향력

- 직접 또는 지배·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봄

※ 예외사항은 회계업무방법(예) 제5장제9절 지분법 편 참조

3) 투자 농축협의 결산시 회계처리

- 지분변동액은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변동 원천에 따라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변동 원천	투자농축협의 회계처리	비고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중대한 오류 수정에 의하여 변동하였으나 투자 조합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분법이익 또는 지분법손실과목	영업외손익 계정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에 의하여 변동하였을 경우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또는 부의지분법이익 잉여금변동과목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의 증감
당기순손익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지분법자본변동 또는 부의지분법자본변동 과목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계정

- 결산일 현재 투자농축협과 피투자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금액 중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미실현 손익이므로 제거하여야함

다만, 미실현손익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을 수 있음

(차) △해당 미실현이익 ×××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또는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대) △해당 미실현손실 ×××

○ 회계연도가 동일한 피투자회사의 결산확정 지연시 재무제표 적용방법

- 감사와 대표이사가 서명날인한 결산일 현재의 가결산재무제표 적용

○ 피투자회사의 배당금은 지급 결의시에 투자 농축협에서 회계처리

마. 내부매출금액 제거

○ 유가(지분)증권의 재분류

- 결산기 유가증권 분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오류사항에 대한 정당 계정
재분류

○ 유가증권의 보유목적 및 형태 변경에 따른 분류변경

○ 분류기준 오류에 따른 재변경

- 매도가능외부출자주식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분류오류

※ 최근 지분법 손익과 관련하여 분식회계 처리가 다수 발생

□ 지분법 손익미인식은 법인세, 배당 등 불필요한 외부유출이 다수
발생되며 익년도 경영부담으로 작용

□ 향후 결산 시 지분법손실 미인식사무소 및 회계처리 의심사무소에
대하여 경위서 징구 및 감독부서에 통지하는 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참고 : 외부출자 결산업무 처리사항 》

1. 유가(지분)증권의 재분류

□ 결산기 유가증권 분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오류사항에 대한 정당계정 재분류

○ 유가증권의 보유목적 및 형태 변경에 따른 분류변경

○ 분류기준 오류에 따른 재변경

- 매도가능외부출자주식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분류오류

※ 유가(지분)증권 재분류 처리방법

오류기표에 따른 재분류 처리는 ①보유분(오류) 매도처리 후

②신규분(정당) 매입절차로 진행되며 【통합업무시스템 - 종합
자금 - 외부출자-출자금전표처리(8321)】에서 처리

□ 유가증권 재분류 전산조작 방법

○ 보유분(오류) 매도처리(매도가능외부출자주식)

8321 출자금 전표 처리			
<input type="checkbox"/> 조회조건 <small>* 외부출자 거래는 부수단말(186)로 처리되므로, 텔러인수도 하셔야합니다.</small>			
처리일자	2012-12-11	2012-12-11	
사무소	100012	영동농협	
<input type="checkbox"/> 기본정보 <small>* 출자번호 선택 후 모형조회 클릭 시 계정정보가 조회됩니다.</small>			
출자번호	0100012-176-0000001	유의적영향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출자계정	매도가능외부출자주식	법인등록번호 동원자산관리	
거래유형	매도(판매)	출자방법 현금	
출자원금	(원)	적요	
<input type="checkbox"/> 계정정보			
차변처리계정		대변처리계정	
계정코드	계정명	금액(원)	
대체		1,000,000	
0281511 기타매도가능증권처분순실		0	
합계	1,000,000	합계	1,000,000

○ 신규분(정당) 매입처리(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신규분 매입 시 기본정보입력요청서(붙임 1-2 참조) 작성 후 외부
출자업무 담당자(회원종합지원부 회원지원팀 최현구 차장)에게
송부하여 전산조작 이행

0321 출자금 전표 처리		<input type="button" value="모형조회"/>	<input type="button" value="실행"/>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input type="button" value="초기화"/>	<input type="button" value="닫기"/>																																																											
<p>조회조건 ※ 외부출자 거래는 부수단말(186)로 처리되므로, 텔러인수도 하셔야합니다.</p> <table border="1"> <tr> <td>처리일자</td> <td>2012-12-11</td> <td>2012-12-11</td> <td>사무소</td> <td>705172</td> <td><input type="checkbox"/> 다인농협</td> </tr> </table> <p>기본정보 ※ 출자번호 선택 후 모형조회 클릭 시 계정정보가 조회됩니다.</p> <table border="1"> <tr> <td>출자번호</td> <td>0705172-176-0001575</td> <td><input type="checkbox"/> 유의적영향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td> <td>시장성</td> <td><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td> </tr> <tr> <td>출자계정</td> <td>지분법적용투자주식</td> <td>법인등록번호</td> <td>의성군농협쌀</td> <td>차대체크여부</td> <td><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td> </tr> <tr> <td>거래유형</td> <td>매입</td> <td>출자방법</td> <td>현금</td> <td>처리일자</td> <td>2012-12-11</td> </tr> <tr> <td>출자원금</td> <td>1,000,000 (원)</td> <td>적요</td> <td colspan="3">분류 오류에 따른 신규매수</td> </tr> </table> <p>계정정보</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차변처리계정</th> <th colspan="3">대변처리계정</th> </tr> <tr> <th>계정코드</th> <th>계정명</th> <th>금액(원)</th> <th>계정코드</th> <th>계정명</th> <th>금액(원)</th> </tr> </thead> <tbody> <tr> <td>0220500</td> <td>지분법적용투자주식</td> <td>1,000,000</td> <td></td> <td>대체</td> <td>1,000,000</td> </tr> <tr> <td colspan="3">합계</td> <td colspan="3">합계</td> </tr> <tr> <td colspan="3">1,000,000</td> <td colspan="3">1,000,000</td> </tr> </tbody> </table>							처리일자	2012-12-11	2012-12-11	사무소	705172	<input type="checkbox"/> 다인농협	출자번호	0705172-176-0001575	<input type="checkbox"/> 유의적영향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시장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출자계정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법인등록번호	의성군농협쌀	차대체크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거래유형	매입	출자방법	현금	처리일자	2012-12-11	출자원금	1,000,000 (원)	적요	분류 오류에 따른 신규매수			차변처리계정			대변처리계정			계정코드	계정명	금액(원)	계정코드	계정명	금액(원)	02205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0,000		대체	1,000,000	합계			합계			1,000,000			1,000,000		
처리일자	2012-12-11	2012-12-11	사무소	705172	<input type="checkbox"/> 다인농협																																																												
출자번호	0705172-176-0001575	<input type="checkbox"/> 유의적영향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시장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출자계정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법인등록번호	의성군농협쌀	차대체크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거래유형	매입	출자방법	현금	처리일자	2012-12-11																																																												
출자원금	1,000,000 (원)	적요	분류 오류에 따른 신규매수																																																														
차변처리계정			대변처리계정																																																														
계정코드	계정명	금액(원)	계정코드	계정명	금액(원)																																																												
02205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0,000		대체	1,000,000																																																												
합계			합계																																																														
1,000,000			1,000,000																																																														

□ 유의사항

- 지분법 손익이 발생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기표
⇒ 업무담당자에게 비온라인거래 승인요청 필요
 - 미인식 손익이 과다하여 전기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히 손상하는 경우
해당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 재작성

2. 피투자법인 결산에 따른 지분법손익 인식

□ 결산 시 피투자법인 손익배분(지분법손익 인식)에 따른 농·축협 조치사항

- 당기손익 발생
 - 손익발생에 따른 지분 변동액은 지분법이익, 손실 계정을 통한 순자산 증감기표 이행

8321 출자금 전표 처리		모형조회	실행	도움말	초기화	닫기		
※ 외부출자 거래는 부수단말(186)로 처리되므로, 텔러인수도 하셔야합니다.								
처리일자	2012-12-11	2012-12-11	사무소	637091	영산포농협			
기본정보 ※ 출자번호 선택 후 모형조회 클릭 시 계정정보가 조회됩니다.								
출자번호	0637091-176-0001415	<input type="checkbox"/>	유의적영향력	<input checked="" type="radio"/> 있음	<input type="radio"/> 없음	시장성	<input checked="" type="radio"/> 있음	<input type="radio"/> 없음
출자계정	지분법적용투자주식	<input type="button" value="▼"/>	법인등록번호	나주시조합공	차대체크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네	
거래유형	결산	<input type="button" value="▼"/>	출자방법	현금	<input type="button" value="▼"/>	처리일자	2012-12-11	<input type="button" value="▼"/>
출자원금	1,000,000 (원)	적요	12년 지분법순익 인식					
계정정보								
차변처리계정			대변처리계정					
계정코드	계정명	금액(원)	계정코드	계정명	금액(원)			
02205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0,000	0259800	지분법이익	1,000,000			
0279600	지분법순실	1,000,000	02205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0,000			
02205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	0248800	지분법자본변동	0			
02205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	0220500	지분법자본변동	0			
합계		2,000,000	합계		2,000,000			

☞ 관련 문의 : 회원종합지원부 회원지원팀 최현구 차장(02-2080-6106)

바. 유가증권의 평가

1) 이자보정 대상 자산

- 당 회계연도 수익이지만 시현되지 못한 이자금액이 있는 자산

항	세목	상품
대내 예치금	중앙회신용회계예치금	큰만족실세예금 등
	중앙회신탁회계예치금	중앙회 단기특정금전신탁 등
대외 예치금	타농축협예치금	타농축협예치금
	제1금융기관예치금	예치금, 양도성예금증서, CMA, MMT 등
	기타금융기관예치금	MMT, MMF, CMA 등
유가 증권	채 권	매도가능, 만기보유 채권의 이자수익
	기업어음	선수 수익

2) 시가평가 대상 자산

-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에 대해 매도가능채권, 기업어음과 수익증권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만기보유 수익증권은 신탁예치금평가 손익으로 처리

항	세목	상품
유가증권	채 권	매도가능 채권
	기업어음	매도가능 기업어음
	수익증권	매도가능, 만기보유 수익증권

3) 상품별 결산처리방법 : 보정 및 평가

항	세목	보정		시가 평가	비고
		미수 수익	유효 이자		
예치금	중앙회신용	○			큰만족실세예금, CD, 환매채
	중앙회신탁	○			단기특정금전신탁
	타농축협예치	○			타농축협예치금
	제1금융기관	○			CD, 타행 예금, MMF
	기타금융기관	○			MMF, CMA 등
채권	매도가능	○	○	○	장부가와 시가평가 차이는 기타포괄손익(B/S)으로 기표
	만기보유	○	○		
수익증권	매도가능			○	장부가와 시가평가 차이는 기타포괄손익(B/S)으로 기표
	만기보유			○	장부가와 시가평가 차이는 평가이익(P/L)으로 기표
기업어음	매도가능	○			장부가와 시가평가 차이는 평가이익(P/L)으로 기표
	만기보유	○			
특정금전신탁	만기보유	○			

※ 미수수익, 유효이자 : P/L에 반영

시가평가 : 장부가와 시가평가 차이는 B/S에 반영(만기보유수익증권은 예외
적으로 장부가와 시가평가 차이는 P/L에 반영)

4)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여유자금 외부운용은 연도말 보정기간 경과 후에는 기산일 소급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연말 손익보정 및 평가를 정확히 하여 연도말 기표를 누락 하는 사례 방지
- 채권 및 기업어음은 전산으로 자동계산되며, 그 외 예치금, 수익증권, 특정금전신탁은 해당 농·축협에서 보정 입력해야 됨
- ※ 중앙회 특별회계예치금을 제외한 모든 예치금은(중앙회, 타 농축협, 타금융기관) 수기보정 대상
- ※ 예치금, 수익증권, 특정금전신탁은 해당 자료를 거래 금융회사로부터 수령하여 농·축협에서 보정 처리
- ☞ 관련 문의 : 상호금융자금부 상호금융자금운용지도팀 (02-2080-8255)

5) 상호금융 예치·차입금 결산업무

○ 이자 결산

항 목	정기예치금	상환준비예치금·일시예치금/ 일시·운전·예치금담보차입금
대상 기간	2013. 12. 2.~12. 31. ※ 신규분은 신규일부터	2013. 10. 7.~12. 31. ※ 신규분은 신규일부터
결산 방법	센터 결산	
기표 일자	2013. 12. 31.	
센터처리일자	2014. 1. 1.	
결산이자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업무시스템 / 종합자금 / 예치차입 / 조회 / 결산 정보 / 예치차입 (가) 결산현황(화면번호: 2502)<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산구분 : 본결산▶ 기준일 : 2013. 12. 31.○ 조회가능일 : 2014. 1. 2부터	

○ 이자 보정

항 목	슈퍼정기예치금
보정 방법	센터 보정 (수기보정·환원 기표 불필요)
기표 일자	2013. 12. 31.
센터처리일자	2014. 1. 1.
보정이자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업무시스템 / 종합자금 / 예치차입 / 조회 / 결산 정보 / 예치차입 (가) 결산현황(화면번호: 2502)<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산구분 : 슈퍼예치금보정▶ 기준일 : 2013. 12. 31.○ 조회 가능일 : 2014. 1. 2부터

○ 농축협 조치사항

- 상호금융 예치·차입금 연도 말 결산 및 보정·환원 기표는 센터 일괄 처리되므로 별도의 전표처리는 필요 없으며 조회 가능일에 센터 처리(결산 및 보정) 내역을 확인
- ☞ 관련 문의 : 상호금융자금부 상호금융자금기획팀 (02-2080-8274)

사. 채권·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및 상각

- 1)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
 - 2) 법원의 인가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의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 등 계약조건이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정된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
-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조정이익 과목으로 처리
 -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에 따른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

아. 감가상각누계액의 적립

- 1)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은 월 할(취득월 포함) 계산하여 결산일에 기표
- 2)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는 감가 상각비와 상계

※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회계업무방법(예) 213~220p 및 320p와 관련 지도문서를 참조하여 실시

► 2013년 12월말 기준 고정자산 감가상각 실시

⇒ 관련문서 '13년 12월중 별도 시행예정

자.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연차수당충당부채의 설정 등

- 1) 3, 6, 9월말 및 12월 말일자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연차수당충당부채는 대손추산액 또는 총소요액의 100% 상당액을 적립해야함

▶ 연도별 농축협별 자산건전성 분류 및 요적립액 결과확인 철저

⇒ 상호금융여신지원부 지도문서(중앙(상금여) 43301-1591. 11.21.)

의거 등록기간 중 분류대상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처리일정 준수 철저

▶ 충당금 적립시 유의사항

⇒ 대손충당금잔액이 요적립액에 미달하여 추가로 적립하려는 농축협은 결산손익이체 전까지 반드시 추가 적립기표 완료

⇒ 단, 상기의 농축협은 건전성 재분류 등록 및 재분류 등록 결과자료를 확인하여 비온라인 기산일 거래 가능 기한인 '14. 1. 8.(수)까지 추가적립 기표 완료하여야 함

※ 회계처리는 회계업무방법(예) 320~322쪽 참조

차. 손익의 보정

손익의 수기보정은 통합업무/회계/결산/수기보정입력/본결산수기보정입력 (#6010) 화면에서만 실시하고, 회계입금지급(#1010) 화면 사용은 금함

※ 화면#6010의 수기보정 내역만 '14년도 첫영업일 자동 환원기표 처리됨

1) 미수수익의 보정

○ 미수수익은 전액 보정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은 그러하지 아니함

- ① 결산일 현재 원금 또는 이자(취급수수료 포함)의 연체가 있는 대출 채권, 사업채권, 부동산임대료 등
- ② 결산일 전 영업일 현재 어음·수표부도거래처, 이자감면거래처, 이자 유예거래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 등록된 거래에 대한 모든 채권의 미수수익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현금수입에 의한 수익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미수수익

○ 위 ①~③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미수수익을 보정할 수 있음

- ① 정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포함) 및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포함)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한도액 범위 내
- ②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경우에는 보전한도 금액 범위 내 (대손불인정 확정 채권은 제외)
- ③ 담보로 제공된 예탁금·적금의 예치금 또는 납입액이 관계대출의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 범위 내
- ④ 기타 대출채권의 회수가 확실하여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 수기보정 이자는 기내이자에 한함

- 연체이자가 있는 경우 연체일수에 대한 기내이자율을 곱한 액을 보정

〈 미수수익 보정액 전산자동 보정 〉

1. 전산자동 보정대상

- 상호금융대출금, 정책자금대출금의 미수이자
 - 단, 결산일(2013.12.31.) 현재 원금 또는 이자(취급수수료 포함)의 연체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금에 한함 (수기계좌 제외)

2. 농축협 조치사항

- 결산보정명세의 출력
 - 전산에서 a. 자동정산 보정명세(정상계좌) b. 자동정산 불보정명세(연체계좌)를 출력한 후 자동정산 보정명세는 자동기표된 금액(일괄전표)과 보정명세상의 금액과의 일치여부 확인
 - 자동정산 불보정명세 중 연체상태(원금 또는 이자)이나 결산기준에 의하여 특별히 보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정액을 수기계산 후 직접 전표 입력함
- 결산일에 이미 정상적으로 보정(원가포함)기표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결산일 전표입력이 가능한 기간('14.1.2.~1.8.)에 수취한 경우에는 결산일 입력 절대 불가
(대출금 보정기표와 이자기표가 이중으로 되어 분식결산으로 간주)
- 또한, 결산보정 · 불보정으로 확정된 계좌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취소 및 정정거래를 하여 임의로 보정액을 변경하는 일이 없어야 함
 - '14.1.2.에 결산일(12/31) 보정하지 아니한 금액(연체이자 등) 수취 시
⇒ 2014년도 수익으로 처리('13년 12월말일자 기산일 거래 절대 금지)

※ 보정 대상 근거자료는 중요서류에 준하여 비치 및 관리 요함

2)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결산관련 유의사항

○ 결산(보정) 대상자금 및 적용 기준금리

대상자금	계정과목	적용 기준금리
상호단기농사자금 재해연기감면이자	상호단기농사대출금	은행 기준금리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개선자금'04정책자금대체자금,'04정책자금상환연기, 농업경영회생자금, 귀농귀촌정착지원, 사료구매특별자금	상호특별장기대출금	상호금융 기준금리 은행 기준금리
'06, '09상호금융대체자금	저리대체자금	상호금융 기준금리

* 참고 : '13년 11월말 기준금리 (은행 4.42% 상호금융 5.64%)

○ 결산보정 필요성

- '13년도 중 미정산된 이차보전금에 대한 결산보정 필요

○ 결산 참고사항

- 결산 관련 세부 업무절차는 농업금융부에서 시행예정(12월 25일 이후)

○ 향후 업무처리 사항

- 2013년 이차보전금은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인해 6회차부터 정산되지 않고 있어 미정산된 금액 전체를 결산보정 예정

* 당초 수기보정이었으나, 영업점 업무경감을 위해 '11년부터 전산보정 실시

☞ 관련 문의 : 농업금융부 농업금융전략팀 (02-2080-7568)

3) 미지급비용의 계상

○ 예수금 미지급이자

- ① 결산기준일(2013.12.31.) 현재 온라인 처리되는 계좌의 예수금 미지급 이자 보정은 전산으로 자동처리(기표)되므로 농축협에서는 전표집계표(일괄전표)만 출력하면 됨
- ② 비온라인 예금의 미지급이자 보정은 매 계좌별로 개별계산하여 보정
- ③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예금에 대하여는 이자계산을 하지 않음

○ 차입금 미지급이자

- ① 결산기준일 현재로 차입금이자는 전액 정산기표하고, 정산할 수 없는 차입금이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군지부로부터 내역을 통보 받아 전액 보정 (특히, 일반회계 관련 차입금은 꼭히 확인)
- ② 농·축산경영자금 중 상환기일 미 도래한 일반농업경영자금의 여신 자금이자는 전산 자동보정 됨

○ 기타 미지급비용 계상

- 지급사유가 금년 중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결산 기준일로 보정 기표
- 예금보험료, 보증보험료, 각종 기금 등

4) 선수수익의 계상

○ 2013년 중 수입된 2014년 이후 수익 해당액은 건별로 전액 보정

- 온라인 처리되는 계좌의 선수이자에 대한 보정은 전산으로 자동처리 되므로 농축협에서는 전표집계표(일괄전표)만 출력하면 됨

○ 일반사업과 일반사업채권에 대한 선수수익 분은 매 건별로 개별 계산하여 선수수익 해당액을 보정 기표

5) 선급비용의 계상

- 선급이자, 선급비용 해당액에 대하여는 건별로 수기계산 또는 중앙회로부터 명세를 파악하여 보정 처리

카. 전속 및 공통관리비의 정산

- 각 사무소(본점 및 지점)는 매분기말 및 매년말 전속 및 공통관리비 산출하여 회계별로 배분·정산 기표하여야 함
 - 본지점간 이자정산(지도관리비 정산)기표를 우선 완료한 후, 공통부문 구분 정산 기표 실시 (지도관리비 정산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공통비용 수익까지 공통부문 정산에 반영하여 회계별 배분)
- 공통비용의 회계별 배부는 「전속관리비정산」 및 「공통관리비정산」의 2단계 구분정산(매분기말)에 의해 이루어짐
 - 전속관리비정산(1단계)에 의해 관리·교육지원사업 부문에 배부된 공통비용과 교육지원사업비용을 공통관리비정산(2단계)에서 회계별로 추가 배부

► 2013년말 본지점별·회계별 각종 정산업무 처리절차 및 일정 지도
⇒ 관련 문서 '13년 12월 중 별도 시행예정

III. 본결산 (결산본절차)

가. 결산 손익이체 절차 및 회계처리

1) 결산 손익이체 : '14. 1. 9.(목) 온라인 종료 후

- ▶ 전기이월금, 회계변경누적효과의 잔액정리 및 손익이체, 당기순익금의 처분전이익잉여금(처리전결손금) 처리

⇒ 경제사업장을 포함한 지사무소 및 본점의 모든 손익이체는 센터에서 일괄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본점 일반회계내 당기순익금계정에 당해 손익을 집합하여 처분전이익잉여금(처리전결손금)으로 전산자동처리

⇒ 따라서, 농축협(본점 및 지소)에서는 별도 작업 불필요

2) 회계처리 절차

- 지사무소의 회계변경누적효과 및 손익이체
 - 본점의 회계변경누적효과 및 손익이체
- ※ 회계처리는 회계업무방법(예) 327~331쪽 참조

나. 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표시

1) 처분전이익잉여금 또는 처리전결손금 처리

- 일반사업회계는 당기순손익과 회계변경누적효과 및 중대한 오류수정금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에 가감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으로 처리하며, 농협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을 작성

2) 회계처리

○ 당기손익금이 대변잔액인 경우

▶ 결산일 : 2013. 12. 31. ⇔ 전산으로 자동처리

(차) 당기손익금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

▶ 익년도 충회의결일 : 2014. ○. ○○. ⇔ 농축협(본점)에서 기표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법정적립금 ×××

전기이월금 ×××

사업준비금 ×××

유통손실보전적립금 ×××

사업활성화적립금 ×××

○ 당기손익금이 차변잔액인 경우

▶ 결산일 : 2013. 12. 31. ⇔ 전산으로 자동처리

(차) 미처리결손금 ×××

(대) 당기손익금 ×××

▶ 익년도 충회의결일 : 2014. ○. ○○. ⇔ 농축협(본점)에서 기표

(차) 전기이월금 ×××

(대) 미처리결손금 ×××

사업활성화적립금 ×××

유통손실보전적립금 ×××

사업준비금 ×××

법정적립금 ×××

자본적립금 ×××

회전출자금 ×××

3)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처리

○ 계산상 실수, 회계처리기준의 잘못 적용, 사실의 누락 등으로 인한 전기 오류수정손익은 당기의 영업외손익계정으로 처리

- 다만, 연도 말 중대한 오류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
-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하고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는 재작성함

다. 총계정원장 등의 마감 및 이월

- 이월일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자로 함
- 기말 총계정원장 각 계정잔액은 전산담당부서에서 일괄하여 이월
- 다음회계연도 1월 1일자로 계정과목이 통폐합되는 과목의 이월은 당해 통폐합되는 계정과목으로 이월(전산담당부서에서 일괄 이월함)하고, 계정과목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당해 분리된 과목으로 금액을 나누어 이월
- 회계연도말 총계정원장 각 계정과목의 잔액이 다음 연도로 정확히 이월되었는지 여부를 1월 1일자 일보 또는 (합계)잔액시산표를 출력하여 잔액이월의 정확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각종 보조장부는 결산일자로 마감하고 이월하여야 함

* 이연법인세제도 도입에 따른 법인세회계 실무 알림

☞ 관련문서 : 【중앙(기획)14811-381 2013.10. 06.】

【중앙(기획)14811-397 2013.11. 06.】

【중앙(기획)14811-381 2013.10. 06.】 회계업무방법(예) 개정

1) 개정사유

- '13년 조세특례조세법 개정내용 반영
 - 법인세 세무조정항목 확대로 법인세회계처리(土유보) 변경

2) 주요 개정 내용

- 이연법인세제도 도입

현 행	개 정	비 고
<신설>	이연법인세제도 도입	회계기준서 반영
(법인세차감전순손익 +세무조정)*법인세율	(법인세차감전순손익 ±영구적차이±일시적 차이)*법인세율	이연법인세 가감

주1) 영구적차이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차이 또는 법인세법에서는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일반)기업회계에서는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차이

주2) 일시적차이 : 주로 (일반)기업회계상 자산 · 부채(과세기준액)의 차이

IV. 결산보고서의 작성

-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등을 작성함
- 이익잉여금 처분안(또는 결손금처리안)은 농협법 제67조~68조 및 정관의 규정에 의거 처리
 -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 기준

- ① 법정적립금 :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10/100 이상(자기자본 3배 한도)
- ② 법정이월금 :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20/100 이상
- ③ 임의적립금
 - a. 사업준비금 :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20/100 이상
 - b. 유통손실보전적립금 : 적립여부 및 금액은 총회에서 정함
 - c. 사업활성화적립금 : 국고보조금(지자체, 중앙회 보조금 포함) 상각액 및 고정자산처분의 중 일정액을 추가적립
- ④ 배당 : 미처분 잉여금의 20/100 이상
- ⑤ 이월이익잉여금 : 위의 제 적립금의 적립, 법정이월금의 이월, 배당액 계산 후 나머지가 있을 때는 다음연도에 이월함

- 결손금 보전 순서

- ① 미처분 이월금 ② 사업활성화적립금 ③ 유통손실보전적립금
- ④ 사업준비금 ⑤ 법정적립금 ⑥ 자본적립금
- ⑦ 회전출자금 ⑧ 보전후 부족금 발생시 차기 이월결손금으로 이월

V. 정기총회 개최 및 결산 보고

가. 정기총회 개최

- 이상의 제 절차가 완료되면 정기총회 개최준비를 하고, 2014년도 사업추진 조기착수를 위하여 정기총회는 가급적 '14년 1월 중에 완료
- 조합장은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 비치
 -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농축협은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함
-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2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공고

나. 결산결과 보고

-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결산보고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장(지역농협은 관할 농정지원단장 경유)에게 제출
 - 지역본부는 농축협별 결산보고서를 누락없이 편철하여 보관
 - ※ 대외감독기관의 사본비치 여부 확인 및 제출요구 대비
- 보고일정

보고자료	작성대상	제출처	제출기일	제출방법		
결산보고서 사본 (붙임2)	지역농협	시군 농정지원단	'14. 2. 24.	○ 농축협별 사본 직접 제출		
	품목농협	지역본부				
	지역축협					
	품목축협			※ 지역본부는 편철 보관		
	시군 농정지원단	지역본부	'14. 3. 2.			

※ 2013년도 결산 관련 업무연락은 아리오피스/정보마당/업무자료실/회원종합 지원부/경영관리자료/결산·가결산에 등재할 예정이니 수시로 확인·반영 바람

VI. 기타

1. 2013년도 결산 관련 전산처리 일정

일정	주요 처리 내용
'14. 1. 2.(목) ~ '14. 1.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12.31. 기준 수기보정 완료
'14. 1. 8.(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12.31. 기준 비온라인 거래 완료※ '13년도 법인세비용 기표, 본지점이자 등 제 정산 완료
'14. 1. 9.(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도 결산 손익이체※ '14. 1. 9.(목) 온라인 종료 후 전산자동 손익이체
'14. 1. 10.(금) ~ '14. 1. 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축협별 회계간 자본의 배부 실시<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가된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미처리결손금) 즉 연도중 증감된 자기자본만큼 신용·일반 회계간 배부하는 절차로 반드시 수기기표에 의하여 실시할 것※ 자본의 배부 기표 이외 비온라인 거래 불가
'14. 1. 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도 결산관련 거래 완료

※ 기타 전산업무와 관련한 각종 사항은 IT본부분사에서 시행하는 관련 문서(12월 중 시행예정) 및 업무자료실(결산·가결산방)을 참조하여 회계 처리 일정에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결산 손익계정 보정 및 환원기표 방법

가. 신용회계

구 분	수정분개		환원분개		환원 시기
	차 변	대 변	차 변	대 변	
대출금 미수이자	미수수익	대출금이자	대출금이자 환출	미수수익	첫영업일
대출금 선수이자	대출금이자 환출	선수수익	선수수익	대출금이자	첫영업일
예수금 미지급이자	예수금이자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	예수금이자 환입	첫영업일
차입금 미지급이자	차입금이자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	차입금이자 환입	첫영업일
차입금 선급이자	선급비용	차입금이자 환입	차입금이자	선급비용	첫영업일

나. 일반회계

구 분	수정분개		환원분개		환 원 시기
	차 변	대 변	차 변	대 변	
미수수익	미수수익	해당수익 과목	미수수익환출 해당수익과목	미수수익 미수수익환출	첫 영업일 <u>12/31</u>
미지급비용	판매경비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환입	미지급비용환입 판매경비	첫 영업일 <u>12/31</u>
선수수익	해당수익 과목	선수수익	선수수익	해당수익과목	첫 영업일
선급비용	선급비용	판매경비	판매경비	선급비용	첫 영업일

※ 환원시기 칸의 12.31. : 2013년도 일반회계 보정액은 반드시 수기 정리기표

3. 결산 관련 부문별 업무담당자 현황

구 분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02-)
농축협 결산 총괄	회원종합지원부	과장 정석윤	2080-6065
외부회계감사	회원종합지원부	차장 최종웅	2080-6062
보수/급여/퇴직금 (연월차, 상여금)	회원종합지원부	차장 이용균	2080-6087
출자금, 자기자본	회원종합지원부	차장 서외석	2080-6108
고정자산 감가상각전속및공 통관리비, 지도관리비 등 제정산 관련	회원종합지원부	차장 김남진	2080-6073
신용대출충당금적립기준 적립률 관련(건전성분류)	상호금융여신지원부	차장 윤진찬	2080-3126
일반대출충당금적립기준 적립률 관련(건전성분류)	회원경제지원부	차장 서을수	2080-6342
농축협 회계업무	기획실	차장 유우정	2080-5148
외부출자주식 평가	회원종합지원부	차장 최현구	2080-6106
정책자금대출 이차보전 · 보정	농업금융부	차장 이승욱	2080-7568
중앙회 타회계예치금	상호금융자금부	과장 권준결	2080-8256
카드사업수수료	NH카드분사	과장 김재욱	2080-7219
생명보험 수수료 규정	농협생명	과장 김우철	3786-7313
생명보험 수수료 산출	농협생명	계장 손석	3786-7327
손해보험 수수료	농협손해	차장 임영철	3786-7682

업무구분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상호금융 수신금리	상호금융리스크관리부	과장 김형성	2080-3166
상호금융 여신금리	상호금융리스크관리부	차장 윤승호	2080-3163
상호금융예치 · 차입금리	상호금융자금부	차장 김수곤	2080-8274
여유자금 외부운용 평가 및 손익 관련	상호금융자금부	차장 김유경 과장 권준걸	2080-8256 2080-8255
금융공동망 회비 (지로포함) 환 관련 수수료	상호금융자금부	차장 조은옥	2080-8266
예금자보호기금보험료	조합구조개선지원부	검사역 오문석	2080-5394
경제사업수수료(구매)	자재부	차장 이상진	2080-6396
경제사업수수료(판매)	양곡부	과장 오태승	2080-6274
농기계은행사업	농기계은행 사업분사	차장 송정엽	2080-6427
중앙회공판장 (출하장려금 등)	농산물도매부	차장 백철기	2080-8062
축산물공판장 (기능활성화자금)	축산유통부	차장 이지만	2080-6526
계리 관련 업무문의	IT본부분사	과장 김윤주	2059-3969
		계장 고태우	2059-3975

외부출자 피출자법인 기본정보 입력요청서

(2013년 12월 일)

수신 : 회원종합지원부 외부출자담당자

발신 : OO농업협동조합장(인)

1. 출자 현황

신규 출자의 경우

(단위 : 죠, 원, %)

농·축협명	환코드	출자좌수	출자금액	지분율	비고
울곡농협					

추가 출자의 경우

(단위 : 죠, 원, %)

출자번호	기출자금	추가출자금	합계	지분율

주관 농·축협

주관 농·축협 (첨부 참조)	사무소명	환코드	담당자	연락처

2. 피출자 법인 현황

구 분	내 용		
법인명	설립(예정)일		
법인 주소	20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사업방식 ^(주1)		자본금	
유의적영향력 ^(주2)	유(), 무()	시장성 ^(주3)	유(), 무()
계정과목 ^(주4)		결산월일	
직원현황	정규직원수	비정규직원수	
업종		기타	

- 사업방식은 연합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기타 중 선택
- 2013년 회계업무방법서(예) 제5장 제9절 제4관 제2조(유의적인 영향력)를 참고하여 작성
- 시장성은 상장주식(코스피, 코스닥 등록) 등을 의미함
- 계정과목은 투자금, 매도가능외부출자주식,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중에서 선택
- 법인등기부등본을 외부출자담당자에게 개인우편 송부**